

# 條例(案) 檢討報告書

##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### 1. 주요 법적 근거

-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(적용범위) ①~②항 생략  
③항 :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,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 규제의 정비, 규제 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동법 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항 생략  
③항 :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 또는 조례·규칙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.
- 동법 제23조(설치)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.
- 동법 제25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 
③항~⑥항 생략

## 2. 검토의견

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